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부당 이익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(안 제19조의4 개정)

가. 개정 취지

- 중대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* 이 개정됨에 따라

*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0138호, '24.1.23. 공포, '24.7.24. 시행

제37조의2(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
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

-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, 위법성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위 규정 마련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과징금 금액 2배 상향 및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

구 분	현 행	개 선
과징금 금액	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량×판매 금액	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량×판매 금액×2배
차등부과	<신 설>	위반행위의 내용, 기간,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